

국제교류센터 규정

(제정 2002.12.18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국제교류원 부설 국제교류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1.1.>

제2조(업무) 국제교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
2. 국제교류협력의 기본정책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
3.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
4.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
5.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및 지원
6. 교환학생, 해외어학연수, 해외현장학습, 복수학위, 국제산학협력,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시행
7. 학생 및 교직원의 국제 관련 활동 자문
8. 해외유학장학기금에 의한 유학생 선발 및 지원
9.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관리
10.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국제 업무 관련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국제교류센터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직원)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, 약간명의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장 (삭 제)

제5조 (삭 제)

제6조 (삭 제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(규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제교육협력부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규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외협력홍보본부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규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외협력홍보본부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